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24호 2022. 5. 6.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훈 령

- 삼척시 훈령 제314호 삼척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 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6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3
- 삼척시 고시 제6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6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549호 202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고 ----- 19
- 삼척시 공고 제555호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 20
- 삼척시 공고 제558호 지적확정예정통지(3개지구) 공시송달공고 ----- 23
- 삼척시 공고 제563호 2022~2023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공고 ----- 30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5월 4일

삼척시장 매월 심원섭

삼척시 훈령 제 314 호

삼척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삼척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삼척시를 말한다.
2. "관할관청"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수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자동차의 운전자로 고용되어 직접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5. "근속경력"이란 운전면허 또는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정지에도 불구하고 소속업체에서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면허발급 기본자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을 허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2.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기본자격을 갖춘 사람
3. 과거에 면허를 받은 사람(사업면허 양수 포함)로서 그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면허신청일까지 5년이 경과한 사람
4.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토록 하기 위하여 신규·양수·대리운전의 인가는 사업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사업구역에서의 운전경력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5.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
6. 면허신청일 현재 개인용달 또는 개별화물 운송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
7.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간 지입제 운영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및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별 고용되어 지입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사람
8.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사람
9. 시행규칙 제49조에 정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제4조(신규면허)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공개로 모집하되 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공고는 면허신청접수일 1일 전에 공고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단, 택시총량 산정 결과에 따른 감차로 발생하는 면허의 발급은 택시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신규 면허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하여 합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종류가 2개 이상 해당될 때에는 상위 종류 1종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훈·포장 또는 표창은 운전경력기간 중 교통발전에 공적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다.

- 1. 훈·포장, 대통령표창수상자 : 1년
 - 2. 국무총리표창수상자 : 9월
 - 3. 강원도지사의 대중교통친절서비스왕 수상 및 10년 이상 모범운전 근속 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자 : 6월
 - 4.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표창수상자 : 6월
 - 5. 삼척시 관내에서의 노동조합대표자(단, 노동조합설립신고서상 대표자, 단체협약, 노사간 합의서 및 노사대표자의 경력확인이 있는 자에 한함)
 - 가. 경력 6년 이상인 자 : 6월
 - 나. 경력 3년 이상인 자 : 3월
 - 6.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 6월
- ④ 시장은 심사결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각 신청인은 게시공고일 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⑤ 개인택시차량은 "개인"으로 표시하고 차체외부 상단의 표시등에도 "개인"표시를 하여야 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교부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차안의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전경력) ① 무사고운전경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따라 최종 교통사고일 부터 면허신청일 까지 경력으로 하되, 신규면허 시의 무사고운전경력은 면허공고기간의 면허신청공고일 까지 경력으로 하며, 교통사고는 사고의 경중이나 물적·인적 피해를 구분하지 않고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다만,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결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었으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 등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 "범죄혐의 없다"는 내용으로 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제6조(면허발급우선순위 적용기준 등) ① 동일 회사 장기근속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 부터 면허신청공고일 까지 계속하여 같은 회사에서 운수종사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서 운수종사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퇴직 후 7일 이내에 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취업한 경우(퇴직금을 받은 경우 제외)

2. 인사발령원부에 취업으로 되어있지 않은 기간(미발령기간)은 급여지급 관련 서류 및 배차일보 등의 근거서류로써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②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장기 무사고운전경력자

2. 장기 택시운전경력자

③ 우선순위 결정에 참작할 표창은 운전업무와 관련한 공적으로 받은 표창에 한정하며, 1985년 5월 31일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지입차주에 고용된 운전자(지입차주 포함)는 개인택시면허대상에서 제외하며, 처벌경중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사람은 면허신청공고일 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는 개인택시면허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면허공고기간의 면허신청공고일 부터 기산하여 다음과 같이 순위를 하향 조정한다.

1. 과거 1년간 1회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자는 자기순위의 차순위 적용

2. 과거 2년간 2회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자는 자기순위의 차차순위 적용

3. 과거 3년간 3회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자는 개인택시면허 배제

4.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누산벌점이 181점 이상인 사람은 개인택시면허 배제

⑥ 별표 1의 제2순위 사목(1)의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5조를 적용하되, 개인택시면허 기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당사자)
2. 국가유공자의 처
3. 국가유공자의 자녀
4. 기타

제7조(운전경력 산정 및 증명발급)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결근 또는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② 매월을 기준으로 실제 운전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의 운전경력은 1개월로 보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실제 운전한 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③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회사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하였거나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다만, 면허의 취소·정지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은 근속으로 인정한다.

④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전자의 운전경력 증명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⑤ 소속조합에는 취업 관련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으나, 사업체에는 취업 관련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운전경력증명 발급 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 관련 서류와 급여지급 관련 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납세필증명서류, 조합에 갖추어 놓은 취업 관련 서류를 확실한 근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⑦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에는 고용 관련 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⑧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소속조합에서 해당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⑨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의 운전경력은 각 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기관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으로 한다.
- ⑩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본다.
- ⑪ 운전자 신분을 보유한 자로서 노동조합업무에 전담한 노동조합 전임간부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본다. 전임간부란 도단위 지부장, 도단위 수석부지부장, 단위노조장을 말한다.
- ⑫ 노사분규 등에 따른 직장 폐쇄기간 및 15일 이상 장기 파업에 따라 실제로 운전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근속경력에 가산하되, 운전경력에서는 제외한다.

제8조(사업의 양도·양수, 상속승계, 대리운전자격 완화 등)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상속승계, 대리운전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의 면허발급 기본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상속승계, 대리운전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본자격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

되어 자가용(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자동차, 자가용화물차, 자가용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내에서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면허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차 및 자가용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③ 면허신청(접수)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며,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사람

④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의 질병 확인은 국공립병원장 및 종합병원장의 진단서로 확인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일반의원에 입원하거나 치료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일반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할 수 있다.

⑤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제2호나목의 건강진단서는 국공립병원장 및 종합병원장 또는 일반병원장의 진단서로 한다.

⑥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기간에는 양도·양수를 허가하지 않는다.

제9조(대리운전) 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면허자의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대리운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2. 신고를 수리한 경우 면허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은 대리운전기간동안 시청에 보관하고 대리운전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에서 발급한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잘 볼 수 있도록 차내의 정면

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단위사업조합의 임원이 대리운전 신고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용하되, 임기만료 및 해임 등 신분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 후 제출된 서류에 거짓 또는 위조·변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를 준용하여 면허취소일로부터 2년간 개인택시면허신청자격을 배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분에 대한 추가면허는 하지 않는다.

제11조(사무처리의 범위) 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규정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민원서류의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회사의 관련 서류를 실사할 수 있다.

제12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하지 않고 시장이 필요할 경우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며, 교통행정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과 시의원, 언론인, 교수, 운수업체의 대표, 노조대표 그 밖의 운수관련 인사와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관할관청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할 수 있다.

1. 면허신청자의 제3조(면허발급 기본자격) 적합여부 심사

- 2. 면허신청자의 운전경력·근속경력·무사고경력 심사
- 3. 면허신청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 및 심사
- 4. 면허신청자의 제6조제2항(우선순위 적용) 심사
- 5. 그 밖에 관할관청에서 회의 안건에 부친 사항
-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⑥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면허(양도받은 경우도 포함한다)된 개인 택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면허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인택시면허우선순위표

<p>제 1 순 위</p>	<p>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증인 자</p> <p>나.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p> <p>다. 사업용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 버스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증인 자</p> <p>라.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p> <p>마.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동일 버스회사에서 12년 6월 이상 근속증인 자</p> <p>바. 군 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20년 이상 운전한 자와 관용차량을 20년 이상 운전한 자</p>
<p>제 2 순 위</p>	<p>가.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증인 자</p> <p>나.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p> <p>다. 사업용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p> <p>라. 사업용자동차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p> <p>마.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는 제외한다.</p> <p>바. 범피신고 검거자 및 동일 택시회사 7년 이상 근속증인 자</p> <p>(1)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 또는 검거하여 구속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다만, 중요범인은 강력범·조직폭력·소매치기·약취유인·마약사범에 한한다.</p> <p>(2)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증인 자</p> <p>사.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 1인으로서 택시를 7년 이상 또는 사업용자동차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p>

	<p>(2) 상훈법에 의하여 훈포장을 받은 자</p> <p>(3) 대통령·국무총리·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와 교통사고야기 도주차량 검거 유공자로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자</p> <p>아. 군 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5년 이상 운전한 자와 관용차량을 15년 이상 운전한 자</p>
<p>제 3 순 위</p>	<p>가.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자</p> <p>나.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p>
	<p>다. 사업용자동차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p>
	<p>라.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p>
	<p>마. 7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p>
	<p>바. 군 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2년 이상 운전한 자와 관용차량을 13년 이상 운전한 자</p> <p>사.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요건을 갖춘 자</p>

삼척시 고시 제2022 -6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3.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미로강변로3길 51-47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3건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180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미로강변로3길 51-47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180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미로강변로3길 51-47	20220503	가설건축물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 (미로강변로분기)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11-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1길 17	20220503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 (덕산해변길분기)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38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300	20220503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 위치활용			

삼척시 고시 제2022 -6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6.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건의령로 780-16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주소	계	주소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능구리 49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간의령로 780-16	2건	20220506	가설건축물	20090807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건의형)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삼마을리 119-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203		20220506	가설건축물	20090904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재)	

삼척시 공고 제2022-549호

「주민투표법」 개정(2022.4.26.)에 따라 2022년도 삼척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재공표합니다.

2022년 5월 3일

삼척시장

1. 202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② 청구 서명인수
56,192	7,024

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 ▶ 외 국 인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삼척시에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② 청구 서명인수

- ▶ 투표청구 서명인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삼척시 공고 제2022-555호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일

삼척시장

-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용 또는 증명을 위하여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람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우체국(우편),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저울 등
-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저울) : 10톤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대상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① 판수동 저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③ 전기식지시 저울</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일반 저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요금형 저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정밀 저울</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10톤 미만 대용량 저울</div>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3. 정기검사 일정 시간 장소 : 2022. 6. 7.(화) ~ 6. 17.(금)

검 사 일 정		읍·면·동	검 사 장 소	비 고
6.7(화)	10:00~16:00	도계읍	도계읍 행정복지센터	※ 검사기간 중 토·일요일, 국경일은 실시하지 않음
6.8(수)	10:00~12:00	원덕읍 가곡면	원덕읍 행정복지센터	
	14:00~16:00	원덕읍	임원출장소	※ 해당 읍·면·동에서 검사일정에 검사 못한 경우 인접 읍·면·동에 서 검사받을 수 있음
6.9(목)	10:00~12:00	근덕면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 소재지검사는 해당 읍·면·동 검사중 출장하여 검사예정
	14:00~16:00	노곡면	노곡면 행정복지센터	
6.10(금)	10:00~12:00	미로면	미로면 행정복지센터	
	14:00~16:00	신기면	신기면 행정복지센터	
6.13(월)	10:00~16:00	교 동	교동 행정복지센터	
6.14(화)	10:00~16:00	성내동	성내동 행정복지센터	
6.15(수)	10:00~16:00	남양동	남양동 행정복지센터	
6.16(목)	10:00~12:00	남양동	삼척농협 시작지점 (구 시작동사무소)	
	14:00~16:00	하장면	하장면 행정복지센터	
6.17(금)	10:00~16:00	정라동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붙임” 별지 제21호 서식]

-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계량기를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계량기가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7. 문의처 : 삼척시청 경제과 (☎ 033-570-3368)

[붙임] 소재장소정기검사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삼척시 공고 제2022-558호

공시송달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 「성내1지구」, 「성북1지구」, 「임원1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3일

1. 공고대상 : 불임참조
2. 공고기간 : 2022. 5. 4.(수) ~ 2022. 5. 25.(수) (22일간)
3. 공고장소 : 삼척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
4. 문의처 :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3-570-3762)

불임 1. 공시송달 내역(성내1지구, 성북1지구, 임원1지구)

2. 의견제출서식 1부.

삼척시장 인

우편물발송결과(공시송달용)

성명	발송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취급구분	등기번호	주소	발송일자	배달일자	배달결과
장*순	지역확정에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16-12	도로	74.0	등기	1076051630814	(04409)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49나길	2022-04-20	2022-04-27	폐문부재
장*희	지역확정에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16-12	도로	74.0	등기	1076051630818	(25571)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김*철	지역확정에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6-67	도로	42.0	등기	1076051630789	(22504)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156번길	2022-04-20	2022-04-25	폐문부재
장*욱	지역확정에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16-12	도로	74.0	등기	1076051630815	(01125)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1길	2022-04-20	2022-04-27	폐문부재
김*주	지역확정에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16-43	대	89.0	등기	1076051630774	(14457)경기도 부천시 수도로245번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김*경	지역확정에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16-8	도로	7.0	등기	1076051630778	(25917),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022-04-20	2022-04-25	주소불명
심*진	지역확정에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6-81	대	265.0	등기	1076051630797	(25917), 강원도 삼척시 당지동	2022-04-20	2022-04-25	주소불명
조**남	지역확정에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6-50	도로	149.0	등기	1076051630828	(25919), 강원도 삼척시 성남동	2022-04-20	2022-04-25	주소불명
전*형	지역확정에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6-60	대	529.0	등기	1076051630824	(073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22-04-20	2022-04-26	수취인불명
김*진	지역확정에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6-67	도로	42.0	등기	1076051630777	(25917)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2022-04-20	2022-04-25	수취인불명
심*래	지역확정에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4-5	대	731.0	등기	1076051630798	(25917)강원도 삼척시 죽서루길	2022-04-20	2022-04-25	폐문부재
장*호	지역확정에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4-2	대	493.0	등기	1076051630812	(04028)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우정로1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우편물발송결과(공시송달용)

성명	발송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역	면적(㎡)	취급구분	등기번호	주소	발송일자	배달일자	배달결과
최*화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67	전	284.0	등기	1076051631270	(13928)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최*복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67	전	284.0	등기	1076051631281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중앙로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최*술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67	전	284.0	등기	1076051631283	(27649)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125번길	2022-04-20	2022-04-25	폐문부재
김*기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67	전	284.0	등기	1076051630935	(43015)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북로	2022-04-20	2022-04-26	폐문부재
김*순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93	전	73.0	등기	1076051630971	(48057)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김*자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86-2	대	331.0	등기	1076051631009	(25467)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성*희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63	대	221.5	등기	1076051631043	(38156)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28번길	2022-04-20	2022-04-25	폐문부재
			463-6	대	45.5						
이*희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09-11	도로	10.0	등기	1076051631070	(2595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2022-04-20	2022-04-25	수취인불명
이*구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33-2	도로	46.0	등기	1076051631085	(25343)강원도 평강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2022-04-20	2022-05-02	폐문부재
이*화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86-2	대	331.0	등기	1076051631097	(13867)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2022-04-20	2022-04-29	주소불명
이*자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86-2	대	331.0	등기	1076051631104	(12158)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022-04-20	2022-04-27	폐문부재

전*옥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33-5	도로	7.0	등기	1076051631238	(21351)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2022-04-20	2022-04-28	폐문부재
최*근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67	전	284.0	등기	1076051631279	(6300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7길	2022-04-20	2022-04-26	폐문부재
김*순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93	전	73.0	등기	1076051630934	(48057)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반로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김*경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72	전	232.0	등기	1076051630985	(2593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광대리	2022-04-20	2022-04-25	수취인불명
성*영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63	대	221.5	등기	1076051631038	(08622)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35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유*재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67	전	284.0	등기	1076051631055	(11513)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2022-04-20	2022-04-26	폐문부재
이*수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86-2	대	331.0	등기	1076051631080	(25588)강원도 강릉시 노가니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전*옥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33-5	도로	7.0	등기	1076051631240	(03676)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32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양*희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05-1	대	378.9	등기	1076051631052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김*현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95	대	923.0	등기	1076051630941	(25924)강원도 삼척시 창석로	2022-04-20	2022-04-25	폐문부재
김*순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91	대	1,131.0	등기	1076051630988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강변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박*득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30-2	도로	248.0	등기	1076051631029	(2595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2022-04-20	2022-04-25	수취인불명
김*상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91	대	1,131.0	등기	1076051630936	(11038)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밤골로	2022-04-20	2022-04-25	폐문부재

김*숙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95	대	923.0	등기	1076051630951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강변1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김*규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95	대	923.0	등기	1076051630952	(56056)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두송1길	2022-04-20	2022-05-02	폐문부재
김*선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95	대	923.0	등기	1076051630970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박*희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05-2	전	552.0	등기	1076051631021	(0731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2길	2022-04-20	2022-05-02	폐문부재
사*숙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03-6	대	384.1	등기	1076051631033	(2595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강변1길	2022-04-20	2022-04-25	수취인불명
윤*남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91	대	1,131.0	등기	1076051631061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강변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이*영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95-4	전	283.7	등기	1076051631099	(08583)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2022-04-20	2022-05-02	폐문부재
전*년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91	대	1,131.0	등기	1076051631237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중앙로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고*녀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46	대	155.3	등기	1076051630921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새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김*수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30-12	전	말소	등기	1076051630949	(27172)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8길	2022-04-20	2022-05-02	폐문부재
김*화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56-3	대	137.4	등기	1076051630974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강변1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김*자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30-12	전	말소	등기	1076051630991	(22238)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70번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김*학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30-12	전	말소	등기	1076051630997	(02255)서울특별시 종로구 답십리로83길	2022-04-20	2022-05-22	폐문부재
민*순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30-12	전	말소	등기	1076051631015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새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민*희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86-2	대	331.0	등기	1076051631016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반*자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91	대	1,131.0	등기	1076051631025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강변길	2022-04-20	2022-04-25	수취인불명
안*홍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75	전	359.0	등기	1076051631050	(2595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2022-04-20	2022-04-25	수취인불명
이*형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74	대	311.0	등기	1076051631067	(3148)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이*연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80-2	대	372.2	등기	1076051631078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강변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장*두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48-1	대	324.1	등기	1076051631230	(25924)강원도 삼척시 정삼로	2022-04-20	2022-04-25	폐문부재
장*락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448-2	대	238.0	등기	1076051631233	(39412)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2022-04-20	2022-05-22	폐문부재
조*열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02-5	대	918.9	등기	1076051631261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강변1길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최*진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95	대	923.0	등기	1076051631269	(25956)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2022-04-20	2022-04-29	폐문부재
김*웅	지역확정 예정통지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86	전	531.9	등기	1076051630990	(48263)부산광역시 수영구 호암로29번길	2022-04-20	2022-04-28	폐문부재

■ 지적재조사사업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제출인	성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종전 토지				확정예정 토지					증감 면적 (㎡)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의견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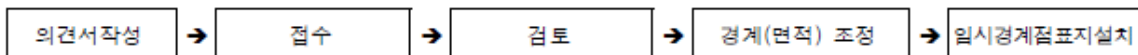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지적재조사사업규정」 제20조에 따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삼척시 공고 제2022 - 563호

2022~2023년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공고

「수산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2~2023년도 어장·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승인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2022. 6. 3.(금)까지 우리시 해양수산과로 어업·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 033-570-3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발계획 수면 도면은 삼척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일

삼척시장

□ 제출서류

1.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
2.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3.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양식업)면허증 또는 어업(양식업)허가증 사본[어업(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1부.
4. 어업(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5. 포기하려는 어업권(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어업권(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
6. 어업(양식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2022~2023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신 청 내 용					승인여부		검토결과 (승인조건)
어업별	위 치	수면 번호	면 적	개발사유	승 인	불승인	
소 계		5개소	82.0ha		82.0ha	-	▪ 정치망어업 : 5건/ 82.0ha
정치망	교동 (관진) 지 선	①	40.0	대체개발 (이설)	40.0	-	◦ 기존 정치망(제2020-1호)을 동일 면적으로 이설 ◦ 기존어장 철거 및 청소 후 개발
정치망	초곡리 지 선	②	10.5	대체개발 (이설)	10.5	-	◦ 기존 정치망(제2021-4호)을 동일 면적 "T"자형으로 이설 ◦ 기존어장 철거 및 청소 후 개발
정치망	장호리 지 선	③	22.5	대체개발 (이설)	22.5	-	◦ 기존 정치망(제2014-2호)을 동일 면적으로 이설 ◦ 기존어장 철거 및 청소 후 개발
정치망	용화리 지 선	④	5.0	대체개발 (이설)	5.0	-	◦ 기존 정치망(제2014-3호)을 동일 면적 "T"자형으로 이설 ◦ 기존어장 철거 및 청소 후 개발
정치망	초곡리 지 선	⑤	4.0	대체개발 (이설)	4.0	-	◦ 기존 정치망(제2019-2호)을 동일 면적 "T"자형으로 이설 ◦ 기존어장 철거 및 청소 후 개발

□ 2022~2023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신 청 내 용					승인여부		검토결과 (승인조건)
어업별	위 치	수면 번호	면 적	개발사유	승 인	불승인	
복 합 양 식 (기류리식)	궁촌리 지 선	⑥	5.0	대체개발 (이설)	5.0	-	◦ 기존 복합양식(제2010-1호)을 동일 면적으로 이설 ◦ 기존어장 철거 및 청소 후 개발 ◦ 양식재해보험 가입 조건 승인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8. 28.>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알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적	
	주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발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포획물·채취물	
	수면의 번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제 호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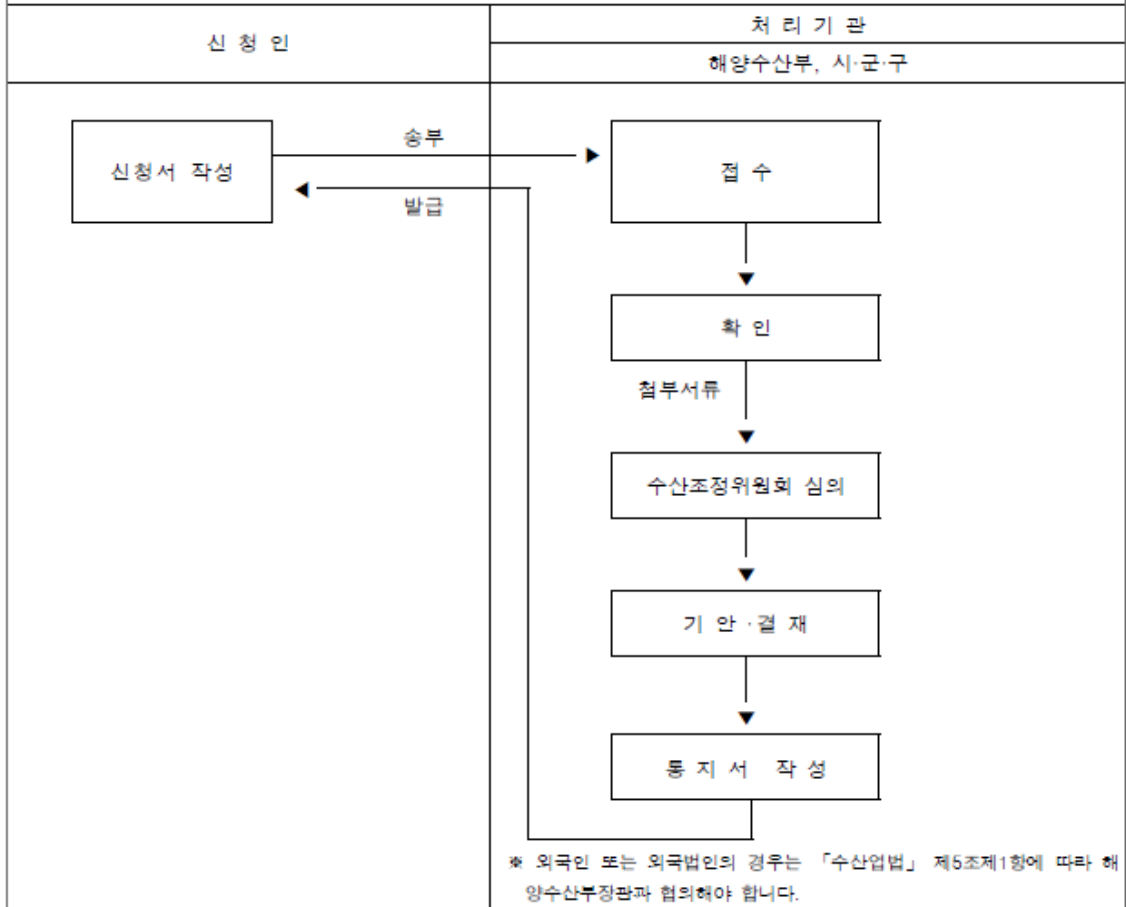
(뒤쪽)

첨부서류

- 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 다.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 라.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
 -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2. 삭제 <2020. 8. 28.>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송부
발급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주소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발 계획 내용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수산물	
	수면의 번호 제 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여권번호 기재는 외국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뒤쪽)

첨부서류	<p>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p> <p>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p> <p>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p> <p>다.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p> <p>라.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p> <p>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p> <p>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p> <p>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의 추진 내용 및 결과(「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자만 해당합니다)</p> <p>나.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합니다)</p> <p>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p>
------	---

처 리 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